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 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16)**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제조(271207)	비정기	900억원대	지방청	

Tex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법인은 '0X년 9월 인발파이프 제조를 주업으로 설립되어 자동차 서스

Text 펜션(쇼바) 실린더, 배관용 관재 등 정밀 인발 강관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Text 19년 1월 SUS(스테인리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

Text - 기존 인발파이프 제조 업체들이 정해진 사이즈 제품만 제조하는 반면, 조사

Text 법인은 인발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사이즈의 인발파이프

Text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과다경비 등 부인	11203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분 손금 부인
2	현금, 부동산의 증여	50101	사주 자녀들 가족 신용카드 결제 대금 및 현금수증액 증여세 신고 누락

Tex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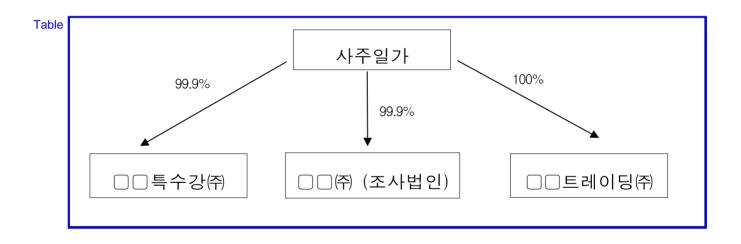
❖ 과다경비 등 부인 (항목코드: 11203)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분 손금 부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법인 □□㈜는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2개 사업부문 중 스테인리스강 사업부문을 □□특수강㈜으로 인적분할하였으며, 사주본인(1억원)·장녀(2억원)· 차녀(2억원) 명의로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하여 조사법인 미음2공장 내에 Text □□트레이딩㈜를 설립



Text ○ (□□트레이딩㈜ 사업장) □□트레이딩㈜은 조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Text 미음2공장과 동일한 장소를 구역 구분 없이 임차하여 사업자등록함

Text ○ (□□트레이딩㈜ 직원현황) □□트레이딩㈜의 유일한 직원 ○○은 '16년 4월

Text 조사법인에 입사 후 '16년 7월부터 □□트레이딩㈜에서 근로소득을 지급

Text 받고 있으며 사실상 조사법인에 근무하면서 □□트레이딩㈜ 업무를 수행한

Text 것으로 판단

Text ○ (□□트레이딩㈜ IP주소) □□트레이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랜카드 Text 고유번호, CPU고유번호는 분석법인의 것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여 실제 Text 조사법인의 사무실에서 □□트레이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Text -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자녀들의 지분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실상 분석
^{Text}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명의만 □□트레이딩㈜으로 변경하여 통행세
Text 이익을 분여하는 것으로 판단 조사 착수
Text ○ (통행세이익 분여혐의 검토) □□트레이딩㈜은 □□㈜가 판매하지 않는 저가의
Text 중국산 파이프를 수입하여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는 상품도매업에 진출하기
Text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매입처·매출처가 대부분 상이하며 □□㈜는 제조업,
Text □□트레이딩㈜는 도매업으로 업종 상이하고 중소기업으로 일감떼어주기
Text <mark>과세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며, □□트레이딩㈜은 대표이사, 종업원을 두고 영업,</mark>
Text 계약, 수출입서류, 세금계산서 등 수수, 각종 신고 등의 서류상·법률상 행위를
Text 법인 명의로 이행하면서 거래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래당사자의
Text 지위에 있어 통행세 이익분여 업체로 보아 실물거래를 부인하기에는 무리가
Text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Text ○ (공동경비 안분 검토) 특수관계법인 □□㈜, □□특수강㈜, □□트레이딩㈜들간
Text 공동경비 안분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Text ○ (□□㈜&□□특수강㈜ 조직도 확보) □□㈜에는 경영지원부, 영업본부,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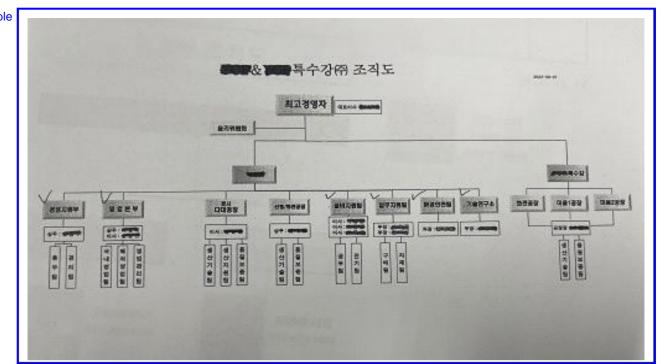
Text 다대공장, 신평/화전공장, 설비지원팀, 업무지원팀, 환경안전팀, 기술연구소가

Text 있으며, □□특수강㈜에는 △△공장, ◇◇1공장, ◇◇2공장이 있는 것으로

Text 확인됨

Text - 조사법인 □□㈜와 □□특수강㈜이 인적분할하였지만 경영지원부, 영업본부 Text 등과 같은 조직은 □□㈜에만 존재함

Table



Text ○ **(경영지원부 조직도 확보)** 부사장 ○○이 □□㈜, □□특수강㈜, □□트레이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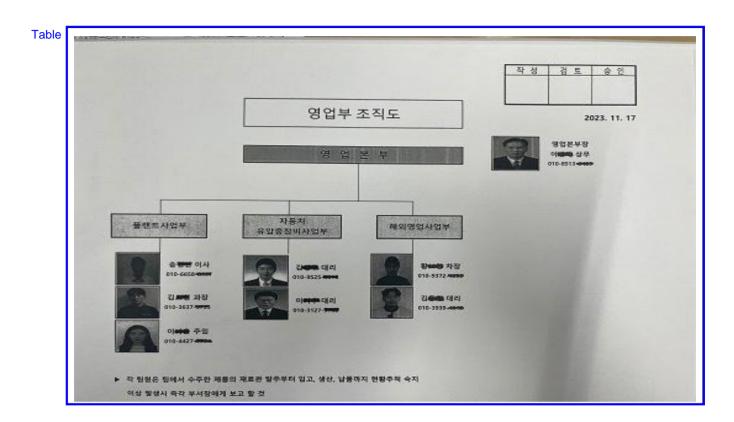
Text 의 자금 및 회계 등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며, □□㈜, □□특수강㈜, □□트

Text 레이딩㈜ 담당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



Text ○ (영업부 조직도 확보) 인적분할하여 □□㈜는 탄소강 사업, □□특수강㈜는

Text 스테인리스강 사업, □□트레이딩㈜은 상품수출업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영업본부에 소속되어 공급처별로 플랜트사업부, 자동차 유압중장비사업부, 해외영업사업부로 구분하여 영업업무와 구매업무를 하고 있음



Text ○ (공동경비 안분누락) 조사법인 소속직원이 특수관계법인 □□특수강㈜, □□

Text 트레이딩㈜의 자금 및 회계, 영업업무, 구매업무 등의 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Text 있음에도 과런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공동경비 안분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함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Text 나. 핵심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현장확인 및 인터뷰) □□특수강㈜, □□트레이딩㈜ 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Text 현장 직원들과 인터뷰하여 조사법인 외에는 경영지원부, 영업부 직원 등이 근무하고

Text 있는 사무실이 없으며 공장시설에서 생선 업무만 하고 있음을 확인함

Table



Text () (내부자료 확보 및 인터뷰) 직원별 업무분장표, 직원별 그룹웨어 기안문, 회의 Text (준비자료, 보고자료 등을 확보하고 부서별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원별

Text 담당 업체 현황 등을 파악함

Text - 대표이사 ○○, 부사장 ○○, 영업담당 ○○, ○○, 구매담당 ○○은 □□㈜ 소속으로

Text 특수관계법인 □□특수강㈜, □□트레이딩㈜의 업무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함

Text - 이들 인건비를 수입금액 기준으로 공동경비 안분계산하여 □□㈜가 부담할

Text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 부인함

Text ○ (납기 내 현금납부) 조사항목에 대한 세법 해석자료, 심판례 등 합리적 과세

Text 근거를 제시하고,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함

Text -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Text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②

❖ 현금, 부동산의 증여 (항목코드: 50101)

사주 자녀 가족신용카드결제대금 및 현금수증액 신고 누락

Text **1. 조사착**아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법인 사주 ○○의 장녀·차녀의 NTIS 정보분석시스템 상 신용카드

Text 해외사용내역 조회한 바 '14년~'23년 동안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신용

Text 카드 11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카드사용자가 사주 ○○로 나타남

Text ○ (가족신용카드) 사주 ○○의 개인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상 카드사용자(사주

Text ○○)와 카드소유자(사주 ○○, 장녀, 차녀)가 일치하지 않아 장녀, 차녀는

Text 가족카드를 사용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

Text ○ (편법증여) 가족신용카드는 발급자 신용으로 가족 명의로 발급되며, 결제

Text 계좌는 발급자 계좌로 연동되어 장녀·차녀에게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여도

Text 사주 ○○가 결제하므로 현금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가족

Text 신용카드 사용액은 증여세 신고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Text 정밀 분석을 실시함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국내신용카드) 국내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소유자·사용자 등 세부정보가

^{Text} <mark>수집되지 않으나 장녀·차녀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국내외 겸용</mark>

Text 카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일한 가족카드일 것으로 판단하여 장녀·

Text 차녀의 가족신용카드 국내외 전체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증여세 신고 누락

Text 여부 검토함

Text ○ (금융거래현장확인) 가족신용카드 사용대금 외에 현금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 Text 장녀·차녀에 대해 금융거래 현장확인 실시하고, 현금 입금액에 대해
- Text 자금출처 소명 요구하여 사주 ○○로부터 수증 여부 검토함

Text ○ (출입국내역조회) 장녀는 '11년 8월부터 영국에, 차녀는 '10년 8월부터 미국에

Text 주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며 장녀는 '19년말부터 국내 체류일 증가하며

Text 조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함

Text ○ (중여세누락) 장녀·차녀는 父 사주 ○○로부터 수증한 현금에 대해 일부

Text 증여세 신고하였고 주식(□□트레이딩㈜)·부동산취득, 외화 송금 등 사용처가

Text 특정되나, 가족신용카드 사용액과 계좌로 입금된 현금은 무신고함

Text - 장녀('89년생)는 '19년 7월부터 근로소득 발생, 차녀('91년생)는 '19년 8월

Text 미국에서 결혼 후 자녀 출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 父 사주 ○○와

Text 독립생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Text ____ 별도 세대를 이루는 성인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은 부양의무에 기반하는

Text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증여세 누락 혐의금액

Text 산정함

Text < 장녀·차녀 증여세 누락 혐의금액 >

(백만원)

Table	성명	구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장녀	가족카드	349	28	38	41	122	120
		현금이체	386	21	102	110	78	75
		합계	735	49	140	151	200	195
	차녀	가족카드	528	73	105	160	91	99
		현금이체	20	_	20	_	_	_
		합계	548	73	125	160	91	99

Text <mark>나. 납세자 소명</mark>

Text ○ (납세자 소명) 장녀는 '19년 7월부터 조사법인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발생

Text 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나, 차녀는 '19년 8월 혼인 후에도

Text 학업을 계속하고 있어 소득이 없으며, 배우자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소득이

Text 없어 관련 증명서 발급되지 않음) 미국의 높은 교육비와 생활비를 父 사주

Text ○○가 지급한 것으로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 정한

Text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생활비 등의 범위에 속함

Text < 조사법인 소명서 및 검토의견 발췌 >

Table

3. 2019.8월 은 미국인(ARVIN JUAN)과 혼인하였으며, 혼인 후에도 계속 하임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의 배우자인 ARVIN JUAN의 2019~2023년 기간 동안에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득이 없기에 관련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실제 ARVIN JUAN은 별다른 작업이 없는 상태로 정수권을 툇바라지하며 가사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 |의 미국 내소득자료를 보면, 2019~2020년 기간에는 소득금액이 없는 겠으로 확인되며(소득이 없기에 판련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2021~2023년 기간에는 대학교에서 수령한 일부 금액이 확인되나, 해당 금액은 급여 등의 정식 근로소득이 아닌, 해당 학교로부터 학생(연구조교) 자격으로 받은 실비 변상적 생격의 금액입니다.

연도	Payment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비 고			
2021	8,904달러	O 지급계 : University of			
2022	13,548달러	California Irvine			
2023	14,065일리	O scholarship of grants →장학금으로 수입금액계산후			
면평균	12,172달러	소득금액에서 상계함.			

Ⅲ. 의견 내용 : "가족카드 사용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속함"

1. 은 2021년부터 2023년 기간에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

제학(석·박사 과정) 중임이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되며, 고정적인 직업 없이 학업에 정진 중입니다.

- 2.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학비, 생활 물가가 월등히 높아 교육비와 생활비 등이 크게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유학생의 경우 미국 대도시의 대학대학원의 교육비, 채류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0만 달러(1.5억원) 이상 소요되는 실점입니다.
- 3.: 온 2019.8월에 혼인을 하였지만, 배우자인 ARVIN JUAN의 수임이 없는 상태였기에 결혼 전후로 정수전의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교육비, 세류비, 생활비 등은 전적으로 정수진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업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수렴한 연 평균 12,172달러(한화 1,500만원 정도)로는 미국 대학 생활을 도전히 영위한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정수진은 계획된 교육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정수진을 부양해 왔던 가족들로부터 가족카드 사용이라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며, 접수진 입장에서는 학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족 카드로 사용한 것입니다.

Table

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⑤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Table

법령 민법 제974조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Text 다. 분명한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차녀부부 미국부동산조회) 북중미 지역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을 조회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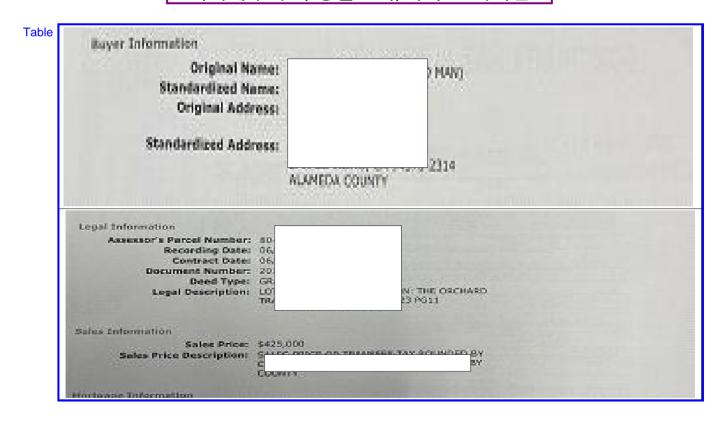
Text 수 있는 웹사이트 LexisNexis에서 차녀와 차녀배우자 OOO 영문이름으로

Text 해외부동산 소유 여부 조회함

Text - 차녀 배우자 OOO는 '16년 6월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택을 \$425,000에 취득

Text 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Text < 차녀배우자 부동산 소유내역 조회화면 >



Text < 차녀배우자 소유 부동산 로드뷰 >

Table



Text - 차녀는 '21년 10월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 소재 주택을 \$1,190,000에 추가로 Text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Text < 차녀 부동산 소유내역 조회화면 >

Table

Buyer Information

Original Name: (MARRIED WOMAN)

MARRIED WOMAN

Standardized Name:

Original Address: WAY

IRVINE, CA 92612

Standardized Address:

IRVINE, CA 92612-2710 ORANGE COUNTY

Legal Information

Assessor's Parcel Number: 453-073-76

| Recording Date: 10/07/2021 | Contract Date: 09/22/2021 | Document Number: 2021000619167 | Deed Type: GRANT DEED

Legal Description: L

Sales Information

Sales Price: \$1,190,000

Sales Price Description: S

Cl.....

Text < 차녀 소유 부동산 로드뷰 >

Table



Text ○ (조사팀 과세논리) 차녀 배우자 000는 '19년 8월 결혼 당시 '16년 6월

Text \$425,000에 취득한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Text 보아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녀는 '21년

Text 10월 \$1,190,000에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Text 보아 父 사주 ○○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Text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Table

법령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Table

법령 민법 제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Table

판례 조심 2023부 0517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려움

Table

판례 조심 2019전 2163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OOO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Text ○ 웹사이트를 활용한 해외부동산을 조회로 명백한 증거 확보와 관련 법령에

Text 따른 타당한 과세논리 제시를 통해 조사법인은 끝내 과세 타당성을 인정

Text 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Text 납기 내 현금 납부함